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0. 3. 20 규칙 제1558호
일부개정 2021. 9. 29 규칙 제160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세우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신청)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조례 제9조에 따른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1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 및 별표 2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배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 착수)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기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 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여 조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정산 등) ①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에너지 사용량을 연 1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9 규칙 제16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점 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1. 9. 29>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제4조제2항 관련)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비고
건축물 노후도 (30점)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30	
	준공 후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과			25	
	준공 후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과			20	
	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			15	
주택 규모 (40점)	공동주택 (전용면적)	40㎡이하		40	
		40㎡초과 60㎡이하		35	
		60㎡초과 국민주택규모(85㎡)이하		30	
		국민주택규모(85㎡)초과		25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가목)		30		
사업비 (30점)	사업비 300만원 이하			30	
	사업비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7	
	사업비 5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24	
	사업비 8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21	
	사업비 1,0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18	
	사업비 1,500만원 초과			15	
가점	복지대상자 (20점)	건축물 소유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20	
		건축물 소유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10	
	다자녀가정 (10점)	건축물 소유자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0	
감점	최근 2년 이내 지원대상 선정 후 포기한 경우			-10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된 경우			-15	
	보조금 기 지원 대상자			-15	

< 비 고 >

1.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다자녀가정: 건축물 소유자가 세 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경우
 - ※ 동점인 경우에는 가점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그 이외에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사업비 순으로 선정
 - ※ 가점은 가장 높은 점수 한 가지를 적용하며, 감점은 감점대상 수에 상관없이 적용하여 합산 산정

[별표 2] <개정 2021. 9. 29>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기준(제4조제2항 관련)

건축물 소유자 구 분	지원 대상 공사		지원 기준 (사업비 대비 지원 비율)		비고
	외부창호	보일러			
일 반	에너지성능개선 (2등급 이상 교체)	저녹스 (1등급)	50% 이내		
			임차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70% 이내	
			임차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60% 이내	
복지 대상자	에너지성능개선 (2등급 이상 교체)	저녹스 (1등급)	기초생활 수급자	90% 이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80% 이내	
			다자녀가정	70% 이내	

< 비 고 >

1. 외부창호의 성능개선 등급은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성능(열관류율, 기밀성)에 준하는 시험성적서(KS F 2278 및 KS F2292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로 확인
2. 사업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3.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수급자
4.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자녀가정: 건축물 소유자가 세 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경우

사 업 계 획 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 첨부서류)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소유자		성별	남, 여
주소			
용도		규모	지상() / 지하()
대지면적(m ²)		연면적(m ²)	
사용승인일			

4. 에너지사용량(신청일 기준 전년도 1년간)

구분	전기사용량	연료		
		도시가스	석유	기타
사용량(년간)	KWh/년	m ³ /년	L/년	
계량기 일련번호				

※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 등에서 발급

5. 에너지 성능 개선비율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절감율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		
보일러 등급	/		

※ 창호, 보일러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제품으로 교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 첨부서류)

본인(단체)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단체)에 관한 아래 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안양시가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제공동의자

(서 명)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관리를 위해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전기 및 가스에너지사용량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5년간 보유 이후 안전하게 파기

4. 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9. 29>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대표 :)
 3.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원

신청액	교부결정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4.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5. 교부조건

-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라.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마. 보조사업자는 법령 또는 조건의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보조금을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 최초 보조금지원신청서에 명시한 자부담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해당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아.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자. 그 외 보조금교부조건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 보조금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지방재정법」, 「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의 규정에 의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청렴 이행서약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신고서 첨부서류)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안양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안양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공사시공자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9. 29>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체 (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		
사업대상지 (건물명)				
공사 개요	건물규모	지하 / 지상	전용면적(m ²)	
	착수일		완료일	
공사 시공사	대표자		회사명	
	주소			
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외부창호 <input type="checkbox"/> 보일러 <input type="checkbox"/> 기타()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margin-top: 10px;">안양시장 귀하</div>				
첨부서류 : 사업완료보고서				

사업 완료 보고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첨부서류)

1. 사업 명 :
2. 사업기간 : 20 (. 개월)
3. 건축물 현황

소유자			
주소			
용도		규모	지상() / 지하()
대지면적(m ²)		연면적(m ²)	
사용승인일			

4. 사업내용

-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보일러 등 설치(교체) 내역

(단위 : 원)

품 목	설치위치	규격(설치면적)	설비용량, 모델명 등	비 용	비 고
계					

- 시설 개선 사항

○ 신설, 교체 사진

장소 및 내용		
사 업 전	사 업 중	사 업 후

※ 항목별 각각 전·중·후 사진 첨부

5. 시공업체

- 상 호 : (업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20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소유자			
주 소			
용 도		규모	지상()/지하()
대지면적(m ²)		연면적(m ²)	
허가,준공연월일			

4. 시공업체
 - 상 호 : (업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5. 에너지 사용량

구 분		단 위	사 업 전	사 업 후	절감량
에너지 사용량	전 력	kWh/년			(절감율 %)
	연료 (가스)	m ³ /년			(절감율 %)

※ 한국전력공사 및 도시가스업체 등에서 발급받은 에너지 사용량 증명자료 첨부

